

[학사규정]원예생명전공 학생의 장학 및 전과

제정 08. 9. 30
개정

제 1 조(장학대상자의 자격요건)

- ① 생명자원과학대학 원예생명과학과 재학생으로 한다.
- ② 직전학기 전공학점 이수율이 전공개설학점의 70%이상인 재학생으로서 평균평점은 3.0이상 이어야한다.
- ③ 학과에 대한 기여도가 큰 학생은 제 1조 ②항의 요건을 예외로 하며, 기여도는 학과교수회의에서 판단한다.
- ④ 한 학기에 내부장학금 이중수혜 혜택은 받을 수 없다(수업료는 제외).
- ⑤ 성적 동점자 처리규정은 학과교수회에서 결정한다.

제 2 조(전과 희망자의 자격요건)

- ① 생명자원과학대학 원예생명과학과 재학생으로서 전과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한다.
- ② 2학년 2학기에 전과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교과목(전공필수 및 전공선택)을 9학점, 3학년 1학기에 전과하고자 하는 학생은 20학점 이상 이수하고, 전체 학점평균이 3.0 이상인 학생 중 합당한 사유로 전과를 희망할 경우 학과교수회의의 의결을 거쳐 전과를 허용할 수도 있다.
- ③ 전과는 편재정원의 20%(2학년 2학기 10%, 3학년 1학기 10%) 이내로 한다.
- ④ 전과 우선순위는 전체학점 평균평점으로 하며, 동점자는 학과교수 회의에서 결정한다.

규정제정사유

원예생명과학과에 배정된 학생으로서 원예생명과학과 학사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의 소양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은 전과에 대해서 불허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2008년 2학기 현재 원예생명과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하여 2학년 2학기에 전과하고자 하는 학생은 제 2조 ②를 적용하지 아니하며, 3학년 1학기에 전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최소요구학점을 9학점 이상으로 한다.